

보 도 자 료

2024년 7월 15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업무담당 : 김준희 [jhkim@kolaa.kr]

총 2쪽

홍보담당 : 김준희 [jhkim@kolaa.kr]

전화(02-2608-2036)/팩스(2031)

시·소설 이용한 수능시험 문제, 시험후 인터넷 게시 저작권(전송권) 침해 [대법원] "시험 목적 정당한 범위 초과" 원심판결 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 소설 등 문학작품이나 미술작품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의 시험문제 출제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이 종료된 후 해당 작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시 등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었다.

대법원 민사3부(재판장 오석준 대법관,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7월 11일 원고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지)사건(대법원 2021다 272001)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신たく받은 저작물을 시험문제에 이용하였다도 수능의 출제와 성적제공까지 완료된 후에 출제한 시험문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수년동안 기간의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사건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게한 것은 시험의 목적에 필요한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하였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권 등을 신たく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저작물사용료를 징수하고 이를 신たく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 등을 하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문과 참고자료 등으로 인용한 고입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의 문제지를 협회의 허락 없이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 받게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위 대법원 판결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고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행위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구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특히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구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원고가 신たく관리하는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이용하려는 자가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그 저작물이 이용된 기출문제 등의 학습자료를 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시장도 장래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는 위와 같은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해당 시장의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게시행위는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이 학교교육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교육기관은 수업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저작권법 제25조의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용허락 없이 장기간 동안 이 사건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이 사건 게시행위를 하였고, 그중 일부 저작물에 대하여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기도 한 점, ▲ 피고는 정부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고, 구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원고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므로, 피고로서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위와 같이 승인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평가문제를 비롯한 기출문제를 피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를 통해 공중에 대한 학습자료의 제공이라는 공익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의 균형을 적절히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피고의 이용방법(이 사건 게시행위)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공정이용 법리’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무법인 로고스(담당 최중현 변호사)가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를 대리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KOLAA 경영기획부 김준희 부장(☎ 010-2750-755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